

제266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권미경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미경
(더불어 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□ 안녕하세요?

더불어 민주당 권미경 의원입니다.

□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

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
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
일몰 규정 삭제를 통하여
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
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일몰규정을
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.

(부칙 제5664호 제2조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

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의원 취지를 깊이 헤아려

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